

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

미래창조과학부

## 미래창조과학부


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 
창조경제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참조

제목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」(미래부 고시) 개정  
알림

1. 관련 :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32조제2항

2. 위 관련으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세부 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」(미래창조과학부 고시)이 2017.1.17.일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주요 개정내용>

○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 기준금액 상향 (제3조)

-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의 기준을 종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

부처(청)에서는 관련 규정·지침 등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, 연구기관에서는 소속 연구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개정이유.

2.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」. 끝.

※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검색 가능

미래창조과학부장관부  
장관인

수신자 : 국가R&D부처청, 출연연 특정연, 전문기관, 사립대학교, 국립대학교, 공립대학

주무관 서경희

행정사무관 최부용

연구제도혁신 전결01/20  
과장 김진형

협조자

시행 연구제도혁신과-123 (2017-01-20)  
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(중앙동)  
전화번호 02-2110-2736 팩스번호 02-2110

접수 연구관리팀-516 (2017.01.23.)  
/ www.msip.go.kr  
/ seohee@msip.go.kr / 공개

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디어 "[creativekorea.or.kr](http://creativekorea.or.kr)"